

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08. 06.

부여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내산면 주암교 위험교량 보수공사(특허공법)		
추정금액		금780,86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08. 07.(금), 10:00
도급액	기초금액	금643,36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08. 14.(금), 10:00
	추정가격	금584,872,728원	개찰일시	2026. 08. 14.(금), 11:00
	부가가치세	금58,487,272원	개찰장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104,920,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32,580,000원	A값: 금33,007,552원	

-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 ※ 본 입찰은 부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사업개요

-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나. 공사현장 : 부여군 내산면 운치리 **679번지**
- 다. 사업내용 : 내역서 참조

3.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제한)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값 내역

(단위/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7,396,468	9,772,803	971,895	4,732,094	10,134,292	0	0	33,007,552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입찰 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여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 적용 등
-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 통보**는 본 공고로 같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기타사항: 아.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 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공사 추진 시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는 특허공법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시 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특허번호	특허방법	특허보유자	소재지
특허 제10-1256108호	교면방수공법	(주)나루기술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86, 402호
특허 제10-1861182호	물탈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주)나루기술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86, 402호

4. 입찰서 제출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또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라. 본 공사는 전문공사를 종합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 종합공사업체가 낙찰예정자로 선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아울러,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로 합니다.

◆ **토목공사업체(또는 토목·건축공사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8호 또는 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문의 : 부여군 건설과 도로팀(041-830-2358)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등록구분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84,872,728	100%

※ 실적에 대하여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릅니다.

-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재무 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마.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를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체결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제출(사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1588-0800)
-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가. 본 공사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부여군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적용대상인 경우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기타사항

-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 참가자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부여군)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부여군) 사용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본 공사는 부여군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차.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건설과 도로팀(041-830-235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태조사 동의서	[첨부 1]
	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첨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련 자격증 사본	자격증 발급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 상실자 포함)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월급 명세서 및 급여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은행발급분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결산부속명세서(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첨부 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첨부 4]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 위 서류는 **개찰일 다음 날까지 건설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 부여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041-830-2108)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부여군수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부여군수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

3. 타 지자체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 부여군에 형식적인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자료로 자본금 충족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 2]

건설업 외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정 자본금	법정 기술자수	업종 등록번호	등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건설업 이외의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 보유 기타업종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중복여부 판단자료로 미기재 및 허위기재서류 제출 적발 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 함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 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자 (인)

붙임 : 보유업종 면허(등록,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첨부 3]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준비 요령

□ 알 림

-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고, 증빙자료와 금액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 계정과목별로 증빙 자료 없이, 세무사의 자료 출력분만으로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심사는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심사하며, 부실자산 및 겹업자산은 삭감됩니다.
- 제출서류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결산일이 다른 경우 그 결산일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계 정	증빙(제출)서류 목록
현 금	①계정명세서 ※ 자본총액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됨
보통예금 (①②③④)	①계정명세서(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잔액 등 표기) ②예금잔액(잔고)증명서: 결산일 기준 - 금융기관 담당자, 결재자의 날인이 있는 원본 제출 ③은행입출금거래내역증명서: 보통예금 - 결산일전후 60일간 - 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증명서, 거래실적확인서 등 *통장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정기예·적금 (①⑤)	④금융거래확인서(은행) 또는 부채증명서(농협 등) - 결산일 기준 - 여신현황이 표기된 것: 거래 금융기관의 차입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차입이 없어도 증빙자료 제출 ⑤정기예·적금 계좌조회표: 개설(신규)일, 만기일, 해지일 표기된 증명서 - 예)농협: 저축성예금조회표, 경남은행: 계좌조회표(이자지급명세서) 등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 ※ 인터넷 발급 불인정, 제출된 은행발급 서류는 해당 은행에 진위 여부를 확인함 ※ 인출제한, 질권설정(이력포함)된 예금은 실질자본금에 불인정됨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	①계정명세서 ②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 대출잔액확인서 ③증권예탁금 계좌별로까지의 거래실적(내역)증명서 ④(결산일 이후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에 대해 입금 후 60일간의 거래내역(60일 이내 인출시 소명자료 포함) - 인출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 ☞지역개발공채: 지역개발공채 실명번호 매출조회(농협)
공제조합 출자금, 융자금	①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융자금잔액 증명원 결산일 ※공제조합발급 원본(인터넷 발행분 가능)

계 정		증빙(제출)서류 목록
매출채권 ((공사·분양)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포함)		①계정별 원장 ②거래처별원장 및 아래의 소명자료(계약시~심사일 현재까지) - 건별 도급계약서 사본(공사, 분양) - 세금 계산서 청구서 사본(심사일현재까지 거래처 원장 상 매출발행분 모두) - 공사(분양)대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심사일현재까지) ※ 위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서류는 거래처별원장의 일자순으로 붙임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내역 ③공사 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건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원가 산정 내역 포함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 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 증빙서류) - 차기년도 1분기내 대가 청구 및 회수내역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의 법적회수가능금액 소명자료: 법원판결문, 담보물건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경매배당표 등 ※ 장기성 채권(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인 경우 부실자산임
미(완)성공사 (미완성주택)		①계약서 사본 ②거래처별원장(세금계산서 발행, 입금액, 잔액 표기) ③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 ④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⑤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증빙서류) ⑥미완성주택의 경우 분양현황표 및 원가안분 내역표 ⑦준공서류, 사진, 건축물대장 등
보증금	임차보증금	①임대차계약서, 금융이체자료(입금증) ②부동산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미등기는 건축물대장 및 사진
	기타보증금	①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②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관증

계 정		증빙(제출)서류 목록
		- 결산일 현재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유형 자산	토지, 건물 건설장비	①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②계정명세서 및 증빙서류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이체자료, 재산세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축물대장,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회계장부에 반영한 평가 근거서류(취등록세 사본, 감정평가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④해당 목적물 사용현황 확인서류(목적물 사진 등) ⑤공사 관련 인허가 서류 ※ 주택, 비업무용 토지,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등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임.
	차량 운반구	①차량등록증 사본 ②차량가액 확인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재고 자산	가설재	①가설재 계정별 원장 및 가설재 평가 명세서(취득일자 기재) ②취득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③가설재 현장 배치 상황표(결산일, 심사일) ④실행 예산서(가설재 투입예산)
	원재료 조경수	①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자료 ②원재료 : 결산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일보(자재수불현황표 포함) ※ 원재료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임(다만, 보유기간 1년 이내의 것은 서류 제출 가능) ③조경수 - 취득시 계약서,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법인출자공증서류 등 법인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조경수의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원장 - 감정평가서(취득 원가 보조 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 (투자자산등)		①투자자산과 관련된 계정명세서 및 계약서 ②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 주주협약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계약서, SPC·SPE 확인서

계 정	증빙(제출)서류 목록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가능
선납세금	①제세결정기관 환급 통보서 ②대금 입금된 법인통장 내역
선금금	①계정별 원장 ②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계약서 및 금융이체자료 - 보증기관이 발행한 선금금 보증서 - 거래처 확인서(거래처 인감 첨부) - 세금계산서(결산일 이후 수취한 것 포함) 및 정산서 - 발주자 확인서 ※ 위 소명서류 미제출시 부실자산 처리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일 경우만 제출> ①대여금 명세서(세부내역) ②대여금 관련 계약서 ③대여금이 지급된 은행계좌 거래실적증명(은행발급원본) ④(매월) 이자수령 계좌 내역 ⑤12월 급여대장 및 결산일 현재 주주명부 ⑥종업원 주택취득현황/우리사주조합 결산서 ※위 경우를 제외한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무기명식 금융상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종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미수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회원권 (골프,콘도 등)	※ 본 항목은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투자자산 (주식 제외)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첨부 4]

사무실 확보 현황

위 치				
연 락 처	대표 핸드폰		사무실 전화	FAX
소 유 자	주소 : 성명 :			
공부상 용도		공부상 면적	m ²	
사용 면적	m ²	소유 구분		

○ 사 진

사무실 배치도

위 치 도

내 부

외 부

※ 내부전경 촬영 시 통신·사무용 설비 포함

※ 외부전경 촬영 시 간판 포함